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31

발의연월일: 2022. 8. 19.

발 의 자:이종배·김선교·엄태영

김정재 • 유경준 • 김학용

정우택 • 박정하 • 성일종

송석준 · 서일준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을 공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돼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바, 투기행위 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대상자, 허가대상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①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	
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	
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	
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는 허가대상자(외국</u>
	인등을 포함한다), 허가대상 용
	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3

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 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 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 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 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 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⑦ (현행과 같음)